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기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노무제공자”의 정의를 신설하는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8928호, '22. 6. 10. 공포, '23. 7. 1. 시행)되고, 고용·산재 보험료의 납부와 관련된 채무에 대해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 납부의무를 지도록 하고, 보험료의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기준을 낮추어 체납자 공개대상 범위를 확대하며, 보험료의 납부의무자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으로부터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으려면 보험료의 완납사실을 증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209호, 2022. 12. 31. 공포, 2023. 7. 1. 시행)됨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기준, 휴업의 신고,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감면 기준, 양수인의 범위와 재산가액의 기준, 보험료의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기준 변경, 보험료 납부의무자의 보험료 완납사실 증명 관련 규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가. 제2차 납부의무에 따른 양수인의 범위 및 재산 가액 한도 기준 마련

(안 제30조의5)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 양도인에게 부과 결정된 보험료 등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부족한 금액에 대해 양수인이 제2차 납부책임을 지게하기 위해 양수인의 범위와 재산가액의 기준을 정함

나. 산재보험 미가입 또는 체납 중 재해 발생 사업장 급여 징수기준 마련

(안 제34조제6항 신설)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 신고나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경우 그 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하던 노무제공자가 재해를 입어 공단이 노무제공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했을 때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재해 발생 사업(장)의 사업주에게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징수하는 보험급여의 산정방식을 정함

다.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시 납부능력 판단 기준 마련(안 제

40조의4제3항 신설)

법 제28조의6제1항에 따른 “체납자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한 경우”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및 미성년자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함

라. 보험료 완납증명 적용 대상 기관·계약의 범위 등 규정(안 제41조의5)

보험료 납부 의무자가 계약의 대가를 지급 받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

완납 증명 시 그 적용 대상 기관을 국가·지자체·공공기관으로, 계약의 범위를 공사·제조·구매·용역 등에 관한 계약으로 정하고, 그 밖에 적용 예외 사유를 정함

마.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 및 위임대상 보험사무의 범위 확대(안 제45조제1항, 제46조)

보험사무대행기관에게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에 법 제48조의6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의 사업주”를 포함하고, 그 위임대상 보험사무의 범위를 개정 법에 맞추어 정비함

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부과·징수를 위한 자료 제공요청 대상 신설(안 제54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료의 부과·징수 등을 위해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단체에 택배서비스 사업자, 가전제품 배송 사업의 도급인,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무점포판매업의 사업주 및 보험회사로 규정하고, 요구할 수 있는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사.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신고기준 마련(안 제56조의8 신설)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산정시 기타소득에서 제외되는 금품으로 ‘비과세소득’과 ‘필요경비’를 규정하고, 소득확인이 어려워 기준보수를 활용하는 직종으로 건설현장 화물차주와 건설기계종사자를 규정함

아.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휴업의 신고기준 마련(안 제56조의9 신설)

기준보수를 적용하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휴업 신고 사유로 부상
· 질병, 임신·출산·육아,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및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휴업하는 경우 등 휴업의 사유를 규
정함

자.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부담분의 산정 기준 명확화(안 제56
조의10 신설)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 산정 방식을 월 보
수액에 산재보험료율의 2분의 1씩 곱하여 산정하도록 명시하여 계산
방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가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함

차.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면제 기준 마련(안 제56
조의11제1항제2호 신설)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금액 미만인 사람은 산재보험료 면제하도록 규정함

카.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신고 방법 마련(안 제56조의12 신
설)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을 노무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공단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기준보수가 적용되는 산재보
험 노무제공자 직종에 대한 신고 방법 및 제출 자료를 규정함

타.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정정신고 방법 마련(안 제56조의13 신설)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정정 신고 방법을 규정하고, 산재보

험 노무제공자가 월 보수액의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소득 증명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파.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방법 마련(안 제56조의 14 신설)

사업주가 노무제공자에게 월 보수액을 지급할 때마다 그 지급금액과 직전의 지급일 이후 따로 지급한 보수액을 더한 금액에서 노무제공자가 부담할 산재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함

하. 플랫폼 운영자의 월 보수액 신고 및 납부 방법 마련(안 제56조의15 및 제56조의16 신설)

플랫폼 운영자가 노무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월 보수액을 신고하도록 하고, 그 정정신고 방법 및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납부 방식을 규정함

거.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지원 방법 마련(안 제56조의17 신설)

플랫폼 운영자가 월 보수액 신고, 산재보험료 납부 등 보험사무를 이행한 경우에 산재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의 종류 및 지급 기준 등을 규정함

너.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대상 사무 정비(안 제56조의22)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권한을 규정하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권한을 삭제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세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2. 26. ~ 4. 10. 및 2023. 3. 16. ~ 4.

2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1건(제공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보수 또는 보수액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보수 또는 보수액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조제2항(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법 제3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후단 중 “신고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 및 신청을”을 “신고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48조의5제2항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3항”을 “법 제48조의5제2항”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률 제18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 금액[법률 제1892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8조에 따라 주된 사업 외의 사업(종전의 제125조제1항에 따른 직종에 종사하는 사업에 한정한다)에서 발생한 재해로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 금액을 포함한다]

제18조제3항제2호 후단 중 “신고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 및 신청을”을 “신고를”로 한다.

제19조의3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이하 “단기예술인”이라 한다)

제19조의4의 제목 “(일수에 비례하여 월별보험료를 산정하는 사유)”를 “(월의 중간에 종료되는 휴직 등 사유)”로 한다.

제2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납부하였는지”를 “납부했는지”로 하고, 같은 부분 후단 중 “단기노무제공자”를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이하 “단기노무제공자”라 한다)”로 한다.

제3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5(양수인의 제2차 납부의무) ① 법 제22조의5제2항 후단에 따라 제2차 납부의무를 지는 사업의 양수인은 사업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 한다.

② 법 제22조의5제2항 후단에 따른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으로 한다.

1.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2. 제1호에 따른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건강보험공단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를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같은 항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른 시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2.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른 시가의 차액이 그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제34조의 제목 “(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을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라 한다)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호 및 같은 법 제91조의17제3항에 따라 산정한 평균보수 중 재해가 발생한 사업을 대상으로 산정한 평균보수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액을 징수한다. 다만, 재해가 발생한 사업만의 평균보수로 보험급여를 산정할 경우 해당 평균보수가 낮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7항 본문, 제67조 또는 같은 법 제91조의19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가 산정되는 경우에는 그 산정된 보험급여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40조의4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제3호 중 “법 제28조의6제2항에 따른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②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28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납부능력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의6제2항에 따른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및 미성년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40조의5의 제목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28조의6제2항

에 따른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로 한다.

제4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5(보험료등의 완납증명이 필요한 경우 등) ① 법 제29조의4제1항 본문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의4제1항 본문에서 “공사·제조·구매·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약. 다만,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로 그 대가를 지급받는 계약은 제외한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약. 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로 그 대가를 지급받는 계약은 제외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체결한 공사·제조·구매·용역 등에 관한 계약. 다만, 일상경비적 성격의 자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금으로 그 대가를 지급받는 계약은 제외한다.

③ 납부의무자가 법 제29조의4제1항 본문에 따라 보험료등의 완납 사실의 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그 증명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계약대가를 지급받는 자가 원래의 계약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완납 사실의 증명을 요청해야 한다.

1. 채권양도로 인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2. 법원의 전부명령(轉付命令)에 따르는 경우: 압류채권자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 수급사업자

④ 법 제29조의4제1항 단서에서 “납부의무자가 계약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로 보험료등을 납부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부의무자가 지급받는 계약대금의 전부로 보험료등을 납부하거나 그 계약대금의 일부로 보험료등의 전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2. 법 제28조에 따른 채납처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그 계약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이 보험료등의 완납(完納)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여 관할법원이 파산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파산관재인이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완납 사실 증명의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에서 보험료

등의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한 경우. 이 경우 완납 사실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료등은 해당 징수유예 또는 환가유예된 금액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계약의 성질상 완납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면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5조제1항 중 “제48조의3제1항”을 “제48조의3제1항·제48조의6제1항”으로 한다.

제4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의 신고·수정신고에 관한 사무

제54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을 “근로소득자료·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 등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54조의2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40조제2항에서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의 도급인(「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급인을 말한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자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12호에 따른 노무제공

자료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의 도급인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제4호 및 제9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및 무점포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의 사업주

4.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③ 법 제40조제2항에서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등 보험료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제공을 받는 사업주의 명단 및 노무제공자의 명단·소득·노무제공내용 등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2. 제2항제4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제공을 받는 「보험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험대리점 명단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6호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배달용·대여용 이륜자동차 유상운송보험 가입자 또는 피보험자에 관한 자료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9호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대리운전 보험 가입자 또는 피보험자에 관한 자료

제56조의8부터 제56조의10까지를 각각 제56조의18부터 제56조의20까지

로 하고, 제56조의8부터 제56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8(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등) ① 법 제48조의6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비과세소득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말한다.

② 법 제48조의6제3항 단서에서 “노무제공특성에 따라 소득확인이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종사하는 직종을 말한다.

제56조의9(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휴업 신고 사유) 법 제48조의6제4항 전단에서 “부상·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업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업의 사유를 말한다.

1.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로 휴업을 하는 경우
2.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
3. 사업주가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휴업을 하는 경우

제56조의10(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부담분의 산정) 법 제48조의6제6항 본문에 따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개인별 월 보수액에 산재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

한 금액으로 한다.

제56조의11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의11(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감면) ① 법 제48조의6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와 해당 사업주”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와 해당 사업주를 말한다.

1. 산재보험료 감경 대상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종사하는 직종의 재해율(공단이 산재보험 급여의 신청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재해율을 말하며, 그 재해율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직종이 속한 업종의 재해율을 말한다)이 전체 업종의 평균재해율(고용노동부장관이 보험연도의 직전 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공고한 것을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인 직종 중에서 산재보험료의 부담 수준, 노무제공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과 그 사람으로부터 노무제공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
 2. 산재보험료 면제 대상자: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사람.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감경 비율은 산재보험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산재보험료의 감경 기간, 면제 대상 월 보수액의 판단 방법 등 산재보험료의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6조의12부터 제56조의14까지를 각각 제56조의21부터 제56조의23까지로 하고, 제56조의12부터 제56조의1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12(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신고 등) ① 법 제48조의6 제8항 본문에 따라 사업주는 월 보수액(사업주가 노무를 제공받은 월에 대해 산정한 것을 말한다)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직종(제19조의2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거나 제공받지 않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② 법 제48조의6제8항 단서에 따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월 보수액을 신고할 때에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56조의13(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의 정정신고) 법 제48조의6제9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는 법 제48조의6제8항에 따라 신고한 월 보수액이 잘못 신고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월 보수액 정정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56조의14(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사업주는 법 제48조의6제11항 전단에 따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게 월 보수액을 지급할 때마다 그 지급금액과 직전의 지급일 이후 따로 지급한 보수액을 더한 금액에서 노무제공자가 부담할 산재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한다.

제56조의15(플랫폼 운영자의 월 보수액 신고 등) ① 법 제48조의7제3항에 따라 플랫폼 운영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3호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 중 같은 조 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플랫폼 운영자는 제외한 플랫폼 운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플랫폼 종사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2호에 따른 플랫폼 종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월 보수액(플랫폼 종사자가 노무를 제공한 월에 대해 산정한 것을 말한다)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플랫폼 운영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가 신고할 수 있다.

② 플랫폼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월 보수액이 잘못 신고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월 보수액 정정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8조의7제4항 단서 및 이 영 제56조의16제2항

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나목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플랫폼 이용사업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4호에 따른 플랫폼 이용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플랫폼 종사자가 월 보수액 정정신고를 할 수 있다.

제56조의16(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및 납부) ① 플랫폼 운영자는 법 제48조의7제4항 본문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 및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그 달의 월별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② 법 제48조의7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란 플랫폼 운영자가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수 지급을 중개하지 않는 온라인 플랫폼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에는 해당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플랫폼 종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료를 플랫폼 종사자로부터 원천공제하여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료와 합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제56조의17(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지원) ① 공단은 법 제48조의7제9항에 따라 플랫폼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플랫폼 운영자가 보험사무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산재보험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법 제48조의7제3항 및 이 영 제56조의15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의

월 보수액을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

2. 법 제48조의7제4항 본문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 및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한 경우

② 플랫폼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플랫폼 운영자의 보험사무에 관한 의무 이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분기별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제56조의22(중전의 제56조의13)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험사무대행기관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를 “보험사무대행기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또는 플랫폼 운영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17호의6 및 제17호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9호의2 및 제20호를 각각 삭제한다.

17의6. 법 제48조의6 제3항, 제4항, 제8항, 제9항, 제12항 및 제13항제1호에 따른 산재보험 사업주 및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관련 신고에 관한 사무

17의7. 법 제48조의7제1항, 제2항, 제3항, 제7항, 제8항 및 제10항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플랫폼 이용 사업자·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 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별표 2 제1호가목 전단 중 “제48조의2제8항제1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1호”를 “제48조의2제8항제1호, 제48조의3제8항제1호 및 제48조의6제13항

제1호”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위반
가. 다음에 해당하는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한 경우 1) 법 제11조(법 제48조의2제8항제1호, 제48조의3제8항제1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험관계의 신고 2) 법 제12조(법 제48조의2제8항제1호, 제48조의3제8항제1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3) 법 제16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 4) 법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 5) 법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신고	법 제50조 제1항 제1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나. 법 제16조의10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50조 제1항 제1호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1명당 3만원, 100만원 한도 근로자,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1명당 3만원, 100만원 한도 근로자,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1명당 3만원, 100만원 한도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1명당 5만원, 100만원 한도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1명당 8만원, 200만원 한도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1명당 10만원, 300만원 한도
다. 법 제29조의3제1항(법 제48조의2 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청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	법 제50조 제1항제2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라. 법 제36조에 따른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	법 제50조 제2항	10만원	30만원	50만원
마.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50조 제1항제3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바. 법 제44조(법 제48조의2제8항제4호, 제48조의3제8항제4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4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8조의4제5항제1호 및 제48조의7제7항제1호에 따른 요구에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관계 서류를 제출한 경우	법 제50조 제1항제4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사. 법 제45조제1항(법 제48조의2제8항제4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48조의4제5항제2호 및 제48조의7제7항제2호에 따른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	법 제50조 제1항제5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아. 법 제48조의6제8항 및 제48조의7 제3항에 따른 월 보수액 등 신고 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50조 제1항제6 호	노무제공자 1명당 3만원, 100만원 한도 노무제공자 1명당 5만원, 100만원 한도	노무제공자 1명당 3만원, 100만원 한도 노무제공자 1명당 8만원, 200만원 한도	노무제공자 1명당 3만원, 100만원 한도 노무제공자 1명당 10만원, 300만원 한도
자. 법 제48조의7제6항에 따른 산재 보험료 원천공제 및 납부를 위한 전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경우	법 제50조 제1항제7 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차. 법 제48조의7제8항에 따른 플랫 폼 종사자의 월 보수액 등 신고와 관련된 정보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50조 제1항제8 호	50만원	50만원	50만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4
 및 제56조의10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부담분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10의 개정규정은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2024년 1월 1일 이
 후 제공하는 노무에 대한 보험료 부담분을 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중 골프장 캐디에 대한 월 보수액 산정·신고)

고 및 산재보험료 감면기준에 관한 특례) 제56조의8제2항, 제56조의11 제1항제2호 단서 및 제56조의1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캐디의 월 보수액 산정·신고 및 산재보험료 감면 기준에 관하여는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제56조의8제2항, 제56조의11제1항제2호 단서 및 제56조의1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2호 및 제13호”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2호·제4호 및 제13호”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준보수의 적용) ① <u>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u>	제3조(기준보수의 적용) ① <u>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보수 또는 보수액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u>
<u><신 설></u>	1. <u>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보수 또는 보수액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u>
1. · 2. (생략)	2. · 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② <u>법 제3조제2항(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준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u>	② <u>법 제3조</u> -----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u>예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8</u>	<u><삭 제></u>

조의2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제2항제3
호에 따른 월단위 기준보수를
예술인의 보수액으로 한다.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예술인[「고용보험법」 제77

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이하 “단기예술인”

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5제2항제2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예술인

은 제외한다]의 개인별 월평균

보수가 제2항제3호에 따른 월

단위 기준보수보다 적은 경우

④ 노무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8조의3제8항제2호에서 준용

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제2

항제4호에 따른 월단위 기준보

수를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으로

한다.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노무제공자[「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이하 “단

기노무제공자”라 한다)와 같은

<삭 제>

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2항
제2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
하지는 노무제공자는 제외하
다]의 월 보수액이 제2항제4호
에 따른 월단위 기준보수보다
적은 경우

제15조(산재보험료율의 특례적용
사업)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생략)

2.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인 사업. 이 경우 상
시근로자수는 법 제16조의10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 및 법 제48조의5제2항
에 따른 신고와 「산업재해보
상보험법」 제1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 및 신청을
기준으로 하여 제2조제1항제3
호가목에 따라 산정하되, 그
산정기간은 기준보험연도의
전년도 7월 1일부터 기준보험
연도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제15조(산재보험료율의 특례적용
사업) ① -----

1. (현행과 같음)

2. 신고를

② _____

사업주가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 제16조의10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 및 법 제48조의5제2항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그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을 기초로 하여 총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제17조(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의 산정) ①·② (생략)

③ 제2항 전단에 따른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합산액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 금액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신설>

----- 법 제48조의5제2항-----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7조(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의 산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않는다.

1. ~ 3. (현행과 같음)

3의2. 법률 제18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 금액[법률 제18928호 「산업재해보상보

그 산정기간은 기준보험연도의 전년도 7월 1일부터 기준보험연도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④ ~ ⑥ (생략)

제19조의3(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16조의3제1항 단서에서 “일용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생략)

2. 단기예술인

3. (생략)

④ ~ ⑦ (생략)

제19조의4(일수에 비례하여 월별 보험료를 산정하는 사유) (생략)

제29조의2(월별보험료 납부 사업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 ① (생략)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주 또는 노무제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9조의3(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현행과 같음)

2.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이하 “단기예술인”이라 한다)

3.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9조의4(월의 중간에 종료되는 휴직 등 사유) (현행과 같음)

제29조의2(월별보험료 납부 사업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

공플랫폼사업자(「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월별보험료를 법 제16조의7에 따른 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매월 확인한 후 지원한다. 이 경우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되,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인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기한 내에 제출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또는 같은 영 제104조의6제2항·제104조의12제3항·제104조의13제3항에 따라 기한 내에 제출한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나 「소득

납부했는지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이하 “단기노무제공자”라 한다)

세법」 제1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한 내에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만을 지원한다.

1. ~ 4. (생략)

③ ~ ⑤ (생략)

<신설>

-----.

1. ~ 4.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0조의5(양수인의 제2차 납부의

무) ① 법 제22조의5제2항 후단에 따라 제2차 납부의무를 지는 사업의 양수인은 사업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 한다.

② 법 제22조의5제2항 후단에 따른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으로 한다.

1.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2. 제1호에 따른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건강보험공단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를 준용하

제34조(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 ~ ⑤ (생략)

<신설>

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같
은 항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
조에 따른 시가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2.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
조에 따른 시가의 차액이 그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
는 금액 이상인 경우

제34조(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급
여액의 징수기준) ① ~ ⑤ (현
행과 같음)

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
조의15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
자(이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라 한다)에게 보험급여를 지급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호
및 같은 법 제91조의17제3항에
따라 산정한 평균보수 중 재해

제40조의4(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제외 사유 등)

① (생략)

<신설>

가 발생한 사업을 대상으로 산
정한 평균보수가 차지하는 비율
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을 기준
으로 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액을
징수한다. 다만, 재해가 발생한
사업만의 평균보수로 보험급여
를 산정할 경우 해당 평균보수
가 낮아 「산업재해보상보험
법」 제36조제7항 본문, 제67조
또는 같은 법 제91조의19제1항
에 따라 보험급여가 산정되는
경우에는 그 산정된 보험급여액
을 기준으로 한다.

제40조의4(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제외 사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28조의6
제1항 본문에 따른 납부능력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의6
제2항에 따른 보험료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의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및 미성년자 여부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법 제28조의6제1항 단서에서 “채납된 금액의 일부납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2. (생략)

3. 재해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으로서 법 제28조의6제2항에 따른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채납자의 인적사항등을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생략)

제40조의5(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8조의6제2항에 따른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⑤ (생략)

<신설>

③ -----

-----.

1. 2. (현행과 같음)

3. -----

----- 위
원회-----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40조의5(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1조의5(보험료등의 완납증명이 필요한 경우 등) ① 법 제29조의4제1항 본문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
른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국가, 지방자
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
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의4제1항 본문에서
“공사·제조·구매·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
른 계약. 다만, 「국고금 관리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로 그 대가를 지
급받는 계약은 제외한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
조에 따른 계약. 다만, 「지방
회계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에 따른 일상경비로 그 대가
를 지급받는 계약은 제외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체결한 공사·제조·구매·용

역 등에 관한 계약. 다만, 일상 경비적 성격의 자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금으로 그 대가를 지급받는 계약은 제외한다.

③ 납부의무자가 법 제29조의4 제1항 본문에 따라 보험료등의 완납 사실의 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그 증명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계약대가를 지급받는 자가 원래의 계약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완납 사실의 증명을 요청해야 한다.

1. 채권양도로 인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2. 법원의 전부명령(轉付命令)에 따르는 경우: 압류채권자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 수급사업자

④ 법 제29조의4제1항 단서에서

“납부의무자가 계약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로 보험료등을 납부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부의무자가 지급받는 계약대금의 전부로 보험료등을 납부하거나 그 계약대금의 일부로 보험료등의 전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2. 법 제28조에 따른 체납처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그 계약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이 보험료등의 완납(完納)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여 관할법원이 파산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파산관재인이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완납 사실 증명의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에

제45조(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 ① 법 제5조 · 제48조의2제1항 · 제48조의3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공단의 인가를 받은 단체, 법인,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생략)

서 보험료등의 징수를 유예하거나 채납처분에 따른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한 경우. 이 경우 완납 사실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료등은 해당 징수유예 또는 환가 유예된 금액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계약의 성질상 완납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면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5조(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 ① -----
-----제48조의3
제1항 · 제48조의6제1항-----

--.

③ (현행과 같음)

제46조(위임대상 보험사무의 범위)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의 신고

3. ~ 5. (생략)

제54조의2(제공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법 제4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 20. (생략)

<신설>

제46조(위임대상 보험사무의 범위) -----

-----.

1. (현행과 같음)

2.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의 신고·수정신고에 관한 사무

3. ~ 5. (현행과 같음)

제54조의2(제공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① -----

-근로소득자료·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 등 대통령령-----.

1. ~ 20. (현행 제1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와 같음)

② 법 제40조제2항에서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의 도급인(「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급인을 말한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신 설>

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자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12호에 따른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를 제
공받는 사업의 도급인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
3호·제4호 및 제9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및
무점포판매업을 운영하는 사
업의 사업주

4.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③ 법 제40조제2항에서 “산재보
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등
보험료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
보를 말한다.

1.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로
부터 노무제공을 받는 사업주
의 명단 및 노무제공자의 명단
· 소득·노무제공내용 등 산
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

<신 설>

재보험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2. 제2항제4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제공을 받는 「보험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험대리점 명단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6호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배달용·대여용 이륜자동차 유상운송보험 가입자 또는 피보험자에 관한 자료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9호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대리운전 보험 가입자 또는 피보험자에 관한 자료

제56조의8(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등) ① 법 제48조의6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또는 제5호

<신 설>

에 해당하는 비과세소득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말한다.

② 법 제48조의6제3항 단서에서 “노무제공특성에 따라 소득확인이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제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종사하는 직종을 말한다.

제56조의9(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휴업 신고 사유) 법 제48조의6제4항 전단에서 “부상·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업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업의 사유를 말한다.

1.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로 휴업을 하는 경우
2.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
3. 사업주가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나

<신 설>

제56조의8 ~ 제56조의10 (생 략)

제56조의11(특수형 태근로종사자
에 대한 산재보험료 경감) ①
법 제49조의3제5항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령」 제12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종사하는 직종으로서 그
직종의 재해율(공단이 산재보험
급여의 신청 등을 고려하여 산
정한 재해율을 말하며, 그 재해
율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
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불가피
하게 휴업을 하는 경우

제56조의10(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의 보험료 부담분의 산정) 법
제48조의6제6항 본문에 따라 산
재보험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료
는 개인별 월 보수액에 산재보
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
으로 한다.

제56조의18 ~ 제56조의20 (현행
제56조의8부터 제56조의10까지
와 같음)

제56조의11(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감면) ①
법 제48조의6제7항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산재보험 노무
제공자와 해당 사업주”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와 해당 사업주를 말
한다.

1. 산재보험료 감경 대상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령」 제83조의5 각 호에 해당

해당 직종이 속한 업종의 재해율을 말한다)이 전체 업종의 평균재해율(고용노동부장관이 보험연도의 직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공고한 것을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인 직종 중에서 산재보험료의 부담 수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을 말한다.

하는 사람이 종사하는 직종의 재해율(공단이 산재보험급여의 신청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재해율을 말하며, 그 재해율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직종이 속한 업종의 재해율을 말한다)이 전체 업종의 평균재해율(고용노동부장관이 보험연도의 직전 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공고한 것을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인 직종 중에서 산재보험료의 부담 수준, 노무제공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과 그 사람으로부터 노무제공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

2. 산재보험료 면제 대상자: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사람.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법 제49조의3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해당 사업주에 대해서는 법 제49조의3 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감 기간 등 산재보험료의 경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감경 비율은 산재보험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산재보험료의 감경 기간, 면제 대상 월 보수액의 판단 방법 등 산재보험료의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6조의12(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신고 등) ① 법 제48조의6제8항 본문에 따라 사업주는 월 보수액(사업주가 노무를 제공받은 월에 대해 산정한 것을 말한다)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2호 및 제13호

<신 설>

에 해당하는 직종(제19조의2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거나 제공받지 않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② 법 제48조의6제8항 단서에 따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월 보수액을 신고할 때에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56조의13(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의 정정신고) 법 제48조의6제9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는 법 제48조의6제8항에 따라 신고한 월 보수액이 잘못 신고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월 보수액 정정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

<신 설>

<신 설>

야 한다.

제56조의14(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사업주는 법 제48조의6제11항 전단에 따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게 월 보수액을 지급할 때마다 그 지급금액과 직전의 지급일 이후 따로 지급한 보수액을 더한 금액에서 노무제공자가 부담할 산재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한다.

제56조의15(플랫폼 운영자의 월 보수액 신고 등) ① 법 제48조의7제3항에 따라 플랫폼 운영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3호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 중 같은 조 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플랫폼 운영자는 제외한 플랫폼 운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플랫폼 종사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2호에 따른 플랫폼 종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월 보수액(플랫폼 종사자가 노무를 제공한 월에 대해 산정한 것을 말한다)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

<신 설>

하는 바에 따라 노무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플랫폼 운영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가 신고할 수 있다.

② 플랫폼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월 보수액이 잘못 신고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월 보수액 정정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8조의7제4항 단서 및 이 영 제56조의16제2항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나목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플랫폼 이용 사업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4호에 따른 플랫폼 이용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플랫폼 종사자가 월 보수액 정정신고를 할 수 있다.

제56조의16(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및 납부) ①

<신 설>

플랫폼 운영자는 법 제48조의7 제4항 본문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 및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그 달의 월별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② 법 제48조의7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란 플랫폼 운영자가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수 지급을 중개하지 않는 온라인 플랫폼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에는 해당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플랫폼 종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료를 플랫폼 종사자로부터 원천공제하여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료와 합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제56조의17(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지원) ① 공단은 법 제48조의7 제9항에 따라 플랫폼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플랫폼 운영자가

제56조의12 (생략)

보험사무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산재보험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법 제48조의7제3항 및 이 영 제56조의15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의 월 보수액을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

2. 법 제48조의7제4항 본문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 및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한 경우

② 플랫폼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플랫폼 운영자의 보험사무에 관한 의무 이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분기별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제56조의21 (현행 제56조의12와 같음)

제56조의1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 공단, 건강보험공단(제56조에 따라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업무를 위탁 받은 자를 포함한다), 보험료납부대행기관, 보험사무대행기관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17의5. (생략)

<신설>

<신설>

18. · 19. (생략)

제56조의2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보험사무대행기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또는 플랫폼 운영자-----

-----.

1. ~ 17의5. (현행과 같음)

17의6. 법 제48조의6 제3항, 제4항, 제8항, 제9항, 제12항 및 제13항제1호에 따른 산재보험사업주 및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관련 신고에 관한 사무

17의7. 법 제48조의7제1항, 제2항, 제3항, 제7항, 제8항 및 제10항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플랫폼 이용 사업자·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 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무

18. · 19. (현행과 같음)

<u>19의2. 법 제49조의3제5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경감에 관한 사무</u>	<u><삭 제></u>
<u>20. 법 제49조의3제6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의 신청, 적용 제외 사유의 소멸 사실 통지 및 산재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등에 관한 사무</u>	<u><삭 제></u>
20의2. ~ 23. (생략) <u>제56조의14</u> (생략)	20의2. ~ 23. (현행과 같음) <u>제56조의23</u> (현행 제56조의14와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연 락 처	(044) 202 - 7359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8838